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8월 11일, 최민희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8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7.) 상정/제안설명/
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5.11.24.) 상정/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4.) 상정/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최민희의원)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승인

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시설 등의 건설허가 신청 또는 표준설계인가 신청 단계에서의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표준설계인가 신청자,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신청자까지도 물리적방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원자력 보안 체계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명현)

개정안은 ① 물리적방호 책임을 원자력시설의 ‘건설허가·표준설계인가 신청자’까지 확대하고 ② 표준설계인가 단계에서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 등의 효력을 표준설계인가 유효기간으로 한정하되, 그 기간 중 물리적방호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시설의 설계단계부터 물리적방호를 이행하도록 한 IAEA의 권고를 국내 원자력안전규제 체계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임.

다만, ‘원자력사업자’ 용어는 개정안 제9조 외에도 동 법 전반에서 통용되는 용어이므로, 개정규정에서만 건설허가·표준설계인가 ‘신청자’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고,

부칙 제2조는 물리적방호 책임 관련 개정규정을 법 시행 당시 건설허

가·표준설계인가 신청자에게도 적용하면서 기존 신청자들의 보완서류 제출기간·절차 등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법 시행 후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류제출 기한·절차 등을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최형두위원)

개정안은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방호 책임 대상을 건설허가·표준설계인가 신청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정비하고, 기존 신청자의 물리적방호 관련 서류제출 기한을 부칙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입서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제 안 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원자력사업자의 범위에 건설허가 또는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 자를 포함시키는 규정의 적용범위를 제9조로 한정함을 명확히 하고, 부칙에서 법 시행 전에 건설허가 또는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 자의 물리적 방호규정 등의 제출기한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신청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안 부칙 제2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안 부칙 제2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① <u>원자력사업자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① <u>원자력사업자(「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0조·제35조제1항·제63조에 따라 건설허가를 신청한 자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u>	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① ----- ----- ----- ----- ----- -----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 ----- ----- -----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② 「원자력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사항의 효력은 해당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효기간 중이라도 물리적방호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인 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 률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원자력사업자”를 “원자력사업자,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0조·제35조제1항·제63조에 따라 건설허가를 신청한 자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원자력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항의 효력은 해당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효기간 중이라도 물리적방호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면 승인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허가를 신청한 자 등의 물리적방호에 대한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0조·제35조제1항·제63조에 따른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인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 사업자의 책임) ① <u>원자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u> 1. ~ 4. (생략) <u><신설></u>	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 사업자의 책임) ① <u>원자력사업자,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0조·제35조제1항·제63조에 따라 건설허가를 신청한 자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 자</u>-----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원자력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효력은 해당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효기간 중이

<u>②</u> (생략)	<u>라도 물리적방호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면 승인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u>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	---